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DOJ, 가격담합한 하이닉스 반도체에 벌금 부과

한국의 DRAM 제조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가 DRAM 시장에서 국제적인 가격고정 카르텔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1억 8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내야 하는 이번 벌금액은 그동안 미국 독점금지 사건에서 부과되었던 형사적 벌금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최근 5년간만 살펴본다면 가장 많은 벌금액이 된다. 이번 사건에는 두 개의 회사와 다섯 명의 개인들도 함께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벌금액은 모두 3억 4천 6백만 달러가 넘는다.

DRAM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제품으로서, 소비자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속 저장 및 정보 검색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 DRAM은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

퓨터,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개인용 디지털 장비, 모뎀, 휴대전화, 통신용 허브와 라우터, 디지털 카메라, VCR, TV, 게임 콘솔 및 디지털 음악 재생기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2004년 미국내 DRAM 매출액은 약 77만 달러에 이른다.

“가격고정 행위는 자유시장 질서를 방해하고 혁신을 억제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Alberto R. Gonzales 미 연방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제적 카르텔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연방법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가격고정담합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컴퓨터와 서버 제조사들에게 판매하는 DRAM 가격을 고정하는 담합을 했다. 이 가격고정 담합으로 델사, 컴

팩 컴퓨터사, 휴렛-팩커드사, 애플 컴퓨터사 및 게이트웨이사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수사의 범위가 국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경을 넘어 일어나는 카르텔을 저지하고 소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다음과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DRAM 가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열린 회합에 참여하여,
- 위의 회합에서 고객에게 판매할 DRAM의 가격 수준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 합의된 바에 따라 거래가격을 정하고,
- 협정 가격을 고수하기 위해 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DRAM의 판매정보를 교환하였다.

법원이 승인한 협정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연방법무부의 DRAM 제조업체에 대한 추후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

의했다. 이에 Scott D. Hammond 독점금지국 형사집행장은 “하이닉스의 협조가 향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경우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는 최고 1천만 달러,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이닉스는 독일의 Infineon Technologies의 뒤를 이어 DRAM 제조분야에서 제2위 사업자이다. Infineon도 지난 2004년 10월에 DRAM 가격담합 혐의로 1억 6천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2004년 12월에 Infineon의 이사로 재직하던 T. Rudd Corwin, Peter Schaefer, Gunter Hefner 및 Heinrich Florian 등 4명은 DRAM 가격고정을 담합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4개월에서 6개월씩의 징역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들 중 3명은 독일 국적 보유자였다.

2005. 4. 21. 연방법무부

DOJ와 FTC, 텍사스 부동산위원회 회의 제안 거부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텍

사스 주립기관인 부동산위원회가 제시한 규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규제안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 텍사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안된 규제안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중개업자들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감소시킨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텍사스 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이 부동산위원회가 이번 규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까지도 함께 구입해야만 할 것이다.

“서비스를 부분별로 제공하는 부분별 서비스 중개업자(limited-service broker)들은 텍사스에서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다 많은 선택가능성을 제공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때문이다”고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안은 부분별 서비스 중개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경쟁의 이익을 제한할 것이므로 텍사스 부동산위원회는 이를 채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주에서는 부동산 서비스가 부분별 서비스 중개업자와 일반 서비스 중개업자(full-service broker)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일반 서비스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개별 부동산 서비스들을 모두 묶어 하나의 단일 가격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분별 서비스 중개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각각의 기호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은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인 명단 정보만을 구매하여 자신이 직접 매수희망자와 매매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안에 따를 경우, 부분별 서비스 중개업자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야 하며, 더 이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희망매수자 명단 정보뿐만 아니라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협상하는 서비스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안이 승인되는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가능성은 보다 적어지며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텍사스 부동산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규제안을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Deborah Platt Majoras 연방거래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이 규제안은 보다 많은 비용 지출과 보다 적은 선택가능성을 유발할 것이며, 이를 상쇄할만한 이

익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5. 4. 21. 연방법무부

FTC의 법률고문에 William Blumenthal씨 지명

연방거래위원회 Deborah Platt Majoras 위원장은 금일, William Blumenthal씨가 법률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공표했다. Blumenthal씨는 현재 King & Spalding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반트러스트 및 거래규제실무담당 파트너이며, 1월에 법률고문대리로 취임한 John D. Glaubert씨의 후임이 된다.

「Bill의 반트러스트에 관한 전문성 및 뛰어난 국제적인 경험은 경쟁 및 소비자보호라는 위원회의 2가지 임무에 있어서 귀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Majoras 위원장은 언급하고 있다.

King & Spalding 법률사무소에서 현직에 있는 Blumenthal씨는 광범위 산업에 대한 합병, 매수 및 합작투자 사안을 처리하고, 거래제한 및 카르텔 행위 사안에서 클라이언트 대리인을 맡아왔다. 더욱이 그는 소비자보호 분야, 그 중에서도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업무로는 FTC, 법무부, 각 주의 사법장관 및

해외 규제당국과의 빈번한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Blumenthal씨는 현재 미국법조협회(ABA) 반트러스트부회의 국제담당 임원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의 경쟁위원회 멤버이며, 국제상공회의소 경쟁위원회 멤버이고, 미국상공회의소 반트러스트 평의회 멤버를 맡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합병작업부회의 신고·절차 소집단(subgroup)에서의 미국 국민 간 분야(sector) 고문 및 Matthew Bender Antitrust Report 편집위원회 멤버이다.

Blumenthal씨의 논문은 California Law Review,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Antitrust Law Journal, Antitrust Bulletin 등의 출판물에 게재되었다. 그는 수평적 합병에 관한 ABA 모노그래프의 주필 및 합병심사절차에 관한 ABA 가이드북의 프로젝트 리더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반트러스트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Blumenthal씨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수여받고, 브라운 대학에서 경쟁학사 및 경제학 수사를 수여받았다.

2005. 2. 28. 미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E U

EU위원회, 정기해상운송 컨소시엄들에 대한 일괄적용제외를 수정 연장

EU위원회는 2010년 4월 25일까지 해상운송업자들 사이의 EU 항만으로 또는 EU 항만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컨소시엄 협정에 대한 일괄적용제외를 수정하여 연장했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되어 2000년에 개정된 바 있는 일괄적용제외는 시장점유율 30% 이하의 정기해상운송 컨소시엄에 대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EU위원회는 회원국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현행 위원회의 규제지침들에 따르면, 정기해상운송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고정을 제외한 모든 공동행위 협정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EU경쟁법으로부터 적용제외 되고 있다. 그러나 여객운송은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이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기 노선들을 그룹화 한 것이다. 그러한 협정들은 통상 해상운송 노선들에서의 사업활동을 합리화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도록 하여, 해상운송 서비스에서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 이 분야

의 컨소시엄들은 충분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이익은 해상운송업자들의 고객인 수출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괄적용제외는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컨소시엄들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한다고 하여 이들간의 공동행위가 반드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경쟁법에 근거하여 위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컨소시엄에 대한 일괄적용제외는 정기해상운송협의회에 대한 일괄적용제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U위원회는 최근에 정기해상운송협의회에 대하여 경쟁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EU위원회는 이 협의회에 대한 경쟁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기로 하고, 부분적으로만 수정을 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컨소시엄 회원사들에게 최초 컨소시엄 참가 후 24개월 이내에 벌과금 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탈퇴 기간과 비교해 볼 때, 6개월 연장된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은 현재 협정의 당사자들이 컨소시엄에 의해 제공되는 해상운송 서비스에서 상당한 신규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컨소시엄 회원사들이 총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에 상당한 투자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이 적용제외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중의 하나가 컨소시엄 내부에서 유효한 가격경쟁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 기밀계약”들도 이제는 그러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05. 4. 25. EU위원회

EU위원회, BT와 Radianz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extranet 사업자인 미국 Radianz사를 BT 그룹에서 인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extranet이란 개인용 보안 네트워크로서, 공중 통신 시스템과 함께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케 한다. 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유효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며, 당사 기업간의 사업활동이 중복되지도 않고, 재무 정보를 지원하는 extranet 서비스 시장이나 전세계 통신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영국의 BT는 세계적인 통신 서비스 사업자이며, Radianz는 금융정보를 교류하는 extranet 서비스 제공사업자이다. 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

는 RadianzNet을 통해 금융사들간의 정보교환이나 거래가 가능해진다.

EU위원회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기업들간의 사업활동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시장진입도 이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수직적 결합이 extranet 서비스 시장 등 관련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여러 선택적인 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제3사업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5. 4. 25. EU위원회

특 일

연방카르텔청, 액화가스사업자에 대해 조사 착수

연방카르텔청은 액화가스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방 카르텔청은 전국적 규모의 액화가스 주식회사인 12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각 주의 수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했다. 이번에는 탱크 및 가스통 저장용 가스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액화가스사업자들이 담합 및 경쟁제한방지법 제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에 관한 협정 체결행위를

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노골적인 가격인상 때문에 새로운 가스공급자를 찾아야만 할 형편”이라고 연방카르텔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고객의 공급선 변경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경쟁제한 사건이 보험회사 지점들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데, 연방카르텔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5. 5. 4.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가스공급업자에 대해 조사절차 종료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속되어 온 가스공급업자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적인 가격형성 혐의에 대한 두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2005년 1월 1일 가스요금을 인상해 온 MITGAS Mitteldeutsche Gasversorgung GmbH(이하 MITGAS)사는 앞으로 2005년 9월 30일까지 더 이상의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것을 연방카르텔청과 약속했다. 2005년 10월 1일에 사업자는 이 시점에서 가정 및 중소기업고객에 대한 공급비용 증가분을 전가할 것이다. 이 밖에 MITGAS는 2005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른바 Classic 요금제에 비해 라는 것으로서 0,3센트/kWh가

저렴하다. MITGAS의 고객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철회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SWU Energie GmbH(이하 SWU)는 자신의 가스공급비용이 총 0,38센트/kWh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30일까지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일부터 비용인상분을 감안한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0,1센트/kWh의 가격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SWU는 밝혔다. 이 밖에도 SWU는 2005년 10월 1일까지 확정요금제를 도입하여, 연료가스(Heizgas)의 가격이 약 0,2센트/kWh 인하된다. 그러나 Rhenag Rheinische Energie AG 와 RWE Westfalen-Weser-Ems AG에 대한 조사절차는 현재까지 아직 종료되지 않고 있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가스공급업자들의 가격인하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업자들에게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5. 4. 28.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취위, 칸사이 전력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칸사이 전력주식회사(이하 칸사이 전력)에 대해 집합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지역의 전기공급에 수반하는 방식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심사를 실시해 왔는데,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4항(거래조건 등의 차별 취급))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조치했다. 이번 심사의 대상이 된 것은 급탕, 주방 등에 관한 주택에 있어서의 모든 열원을 전기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칸사이 전력은 2002년 무렵부터 집합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에 관한 협의의 기회를 이용하여, 주택개발업자 등에 대해 자신이 제시하는 전기공급방식을 채택하는 주택개발업자 등에 비해, 주택의 열원으로서 가스를 함께 이용하는 주택개발업자 등을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혐의가 인정되었다.

첫째, 칸사이 전력은 첫 부하상정용량이 50kW 이상이 되는 집합주택의 경우, 해당 집합주택에 자신이 제시한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대용량 기기가 도입될 때는 저압인포함에 의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개발

업자 등에게 부담이 되는 수전실의 설치를 면제하고 주상변압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한편, 대용량 기기가 도입되지 않고 전기·가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전실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해당 집합주택의 주택개발업자 등에 설명하지 않고 해당 집합주택의 건물 내에 수전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부하상정용량이란, 집합주택의 공용 부분 및 전호에 있어서의 예상 전기사용량을 말한다. 대용량 기기란 전기온수기 및 쿠킹, 히터 등의 200V 정격 기기를 말한다. 저압인포함이란 전압 100V 또는 200V의 저압으로 전기를 끌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전실이란 집합주택의 건물 내에 대하여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획을 말한다. 그리고 주상변압기란 공공 도로 상의 전주나 집합주택의 부지 내에 세운 전주에 장착되어, 전압을 고압으로부터 100V 또는 200V의 저압으로 내리는 변압기를 말한다.

둘째, 단독주택 개발지에 있어 무전주화가 요망되었을 경우, 지중 배전 설비의 유지 관리비 및 재건설비용의 증분을 장래의 전기요금 수입의 증가분을 통해 회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래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도록 해당 단독주택 개발지의 주택에 가능한 한 칸사이 전력이 제시한 전기공급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여,

무전주화에 응하는 조건으로서 자신의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전주화란 단독주택 개발지에 있어서의 경관의 향상 등을 이유로 주택개발업자의 희망에 의해, 특정의 구역에 있어 지중 배전 설비를 채택하고 전주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칸사이 전력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취인위원회는 칸사이 전력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5. 4. 21. 공정취인위원회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현재 일본에서는 시장원리와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한 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으며, 담합 체질로부터 탈피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경쟁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10월 15일에 국회에 제출한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법은 4월 27일에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산정율 인상 등

① 산정율의 인상 등(제7조의2 제1항, 제4항)

- 제조업 등 : 대기업 6%→10%,

중소기업 3%→4%

- 소매업 : 대기업 2%→3%, 중소기업 1%→1.2%

- 도매업 : 1%→대기업 2%, 중소기업 1%

② 과징금 대상 범위의 재검토(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③ 위반행위를 초기에 그만두었을 경우, ①의 비율을 2할 경감한 산정율(제7조의2 제5항)

④ 반복 위반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①의 비율을 5할 가산한 산정율(제7조의2 제6항)

⑤ 벌금과의 조정(제7조의2 제14항, 제15항 및 제51조)

(2) 카르텔로부터의 이탈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질서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징금 감면제도를 도입(제7조의2 제7항으로부터 제13항)

• 법정 요건(위반사업자가 스스로 위반사실을 신고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감면

(3) 형사고발을 위해서 범칙조사권한 도입 등(제12장 등)

(4) 벌칙 규정의 개정(제94조, 제95조)

• 중소기업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 배제조치명령 위반죄와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무거운 형벌의 도입, 조사 방해 등에 대한 벌칙의 강화 및 양

별 규정(법인에 대한 형벌)

- (5) 적정 절차의 보장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한 다음 배제조치명령을 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심판절차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제8장제2절 등)
- (6)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 징수 규정(제18조의2)의 폐지
- (7) 부칙에서,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검토 한다는 내용을 규정

이 중에서 범칙조사권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사건 관계인의 영업소 등에 임검·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임검·수색의 결과로서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국제 범칙 단속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이미 탈세나 내부거래·주가조작 등의 경우에 이미 범칙조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칙조사권한은 절차의 적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조사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조사의 결과에 근거해 고발된다면 이는 영장주의의 잠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므로, 형사고발조사 사안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장에 근거해 적정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 수속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의 적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 심사에 관여했던 자는 심판관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현행법 제51조의2 단서), 심판 절차에서 조사한 증거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현행법 제54조의3), 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현행 규칙 제32조), 심판 사무는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했다(현행법 제35조제3항).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한층 더 적정 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 지휘 등의 심판 절차와 관련되는 심판관의 권한을 명확화 하였으며, 심판에 있어서 피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심사관의 주장 변경을 금지하였다. 또한 심판관으로서 범조 자격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심판관 2명을 증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의 (6)에 대해서는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해 1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005. 4. 20.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주식회사 후지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후지(이하 후지)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해 왔는데, 동 법 제19조(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2항

및 제6항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권고조치 했다.

식료품, 의료품, 일용 잡화용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양판점인 후지는 자사 점포의 신규 오픈 및 개장 오픈시 자사의 판매 업무를 위한 상품의 진열, 보충 등의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 거래상의 지위가 자사에 대해서 뒤떨어지며 자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식료품, 의료품, 일용 잡화용품 등의 납입업자에 대해 종업원 등을 파견시키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후지는 그 거래상의 지위가 자사에 대해서 뒤떨어지며 자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의료품 등의 납입업자에 대해, 매입을 조건으로서 납입된 상품에 대해 그 재고품을 가격인하 판매했을 때에, 납입업자가 가격인하 판매에 따른 이익의 감소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후지로 하여금 향후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납입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자사의 종업원들에게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독점금지법의 준수에 관한 행동 지침에 근거해 구입담당자에 대한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2005. 4. 15. 공정취인위원회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포럼(JFTC와 KPPU 협력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JFTC)의 竹島一彦 위원장이 2005년 1월 12일에 인도네시아 경쟁사업감독위원회(KPPU)를 공식 방문하고, 그 후 Borobudur 호텔 오찬회에 참가하였다. 동 방문에 있어서 竹島 위원장 및 수행 공취위 직원은 2005년 5월 3일과 4일에 보고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포럼(이하 EAC) 실시에 관한 조정 및 정보교환을 하였다. 또한 KPPU와 JFTC는 2005년 공동계획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동 회합은 2004년 4월 20일에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경쟁포럼에서 竹島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동아시아 모든 국가 간의 경제적 제후가 신장하고 있는 점 및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쟁네트워크의 설립이 동아시아 경쟁당국 및 경쟁관계당국에 있어서 최우선 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하게 된다.

JFTC와 KPPU가 공동개최하는 두 번째 포럼은 2005년 5월 4일과 5일에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의 경쟁당국 상위급 회합(이하 TLO)이다. EAC 및 TLO의 양 포럼은(일본 및 인도네시아 이외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및

대만의 경쟁감독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양 포럼에서의 의논 내용은 각 지역에서의 경쟁법의 존재,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산업정책과 경쟁법의 관련성 및 경쟁법 집행상 문제점이다.

이 방문에서 竹島 위원장은 50년 이상 전에 설립된 일본 경쟁감독기관인 JFTC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 전반을 말하였다. 다른 경쟁당국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JFTC도 당초 집행체제 및 경쟁정책의 집행상 많은 문제와 곤란에 직면해 왔다. 이점으로부터 竹島 위원장은 KPPU가(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 JFTC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JFTC가 일본에서 수행해 온 책무 및 기능에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교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경쟁법·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업활동에 대한 많은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알려져 있다. JFTC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단체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독점금지법의 집행시스템을 채용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에 경쟁법에 의한 규제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법적 조치 및 벌금·제재의 부과에 관한 竹島 위원장에 의한 설명은 '새로운' 경쟁감독기관이며, 또한 장래 발전해

나갈 KPPU의 참고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쟁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조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이 경우, KPPU)는 경쟁이 효율성을 높고, 공공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항상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간다. 그러한 점은 KPPU가 일상 업무와 직무를 시종일관 수행해 나가는 데 반영될 것이다.

2005. 3. 인도네시아
경쟁사업감독위원회 발표문